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 제안설명



2022. 9.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성연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합의제 위원회와 달리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회의록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을 회의록의 작성·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장이 아닌 시장으로 규정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회의록을 반

드시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